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2. 2. 7.(월) / 총 2매(본문2)	
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	담당자	• 과장 김경현, 서기관 육인수, 사무관 민경철, 주무관 이상직, 주무관 한현규 • ☎ (044) 201-3369, 4897, 3370, 3378	
보도일시	2022년 2월 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8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「주택법 시행령」 ·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◇ [주택법 시행령] 소형주택(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)의 주거전용면적 상한 · 공간구성 제한 규제완화
- ◇ [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]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「주택법 시행령」과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.

□ 「주택법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※ 「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」(21.9.15.) 후속조치

○ ‘원룸형주택’(도시형생활주택)을 ‘소형주택’으로 용어를 변경하고,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,

-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(예: 침실3, 거실1)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※ 다만,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/3 이내로 제한

-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국토교통부 하자·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하였다.
 - ※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한 개정 「공동주택관리법」(21.8.10. 공포)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

-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현 과장은 “이번 「주택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신혼·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,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” 라고 밝혔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육인수 서기관(도시형생활주택, ☎ 044-201-3369), 민경철 사무관(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, ☎ 044-201-489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